



## 국가인권위원회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(18-진정-0528900)

---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위원회는 렌트카 회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제기된 진정사건(사건번호 : 18-진정-0528900, 진정인 : 강진영, 피해자 : 김민호)을 조사 및 심의한 결과,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결정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통지하오니 결정문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권고 사항의 이행 계획을 우리 위원회로 통지(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44조 제2항 및 제25조 제3항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, 귀 기관의 인권개선 노력을 평가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어려움을 권고 이행 계획을 통지할 때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(같은 법 제25조 4항), 귀 기관의 권고 불수용 통지 내용은 우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(같은 법 제25조 5항).

붙임 1. 결정문(18진정0528900). 1부. 끝.

##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



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, 서울특별시장, 부산광역시장, 대구광역시장, 인천광역시장, 울산광역시장, 광주광역시장, 대전광역시장, 강원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경기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

조사팀장 **윤진배** 대전인권사무 전결 2019.4.3.  
소장 **문은현**

협조자

시행 대전인권사무소-1451 접수 신교통서비스과-105 (2019.04.03.)

우 04551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30, KT탄방빌딩 13층 / [www.humanrights.go.kr](http://www.humanrights.go.kr)

전화번호 042-472-9045 팩스번호 042-472-9046 / [most12@humanrights.go.kr](mailto:most12@humanrights.go.kr) / 비공개(6)